

정책포커스

2021 건축 관련 인증·제도 정리

건축공간연구원(aur)는 연구보고서 '스마트건축 개념을 바탕으로 한 건축물 인증제도 개선 방향'에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기후 변화 등 환경적 이슈들이 나타나는 지금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도 매우 다양해졌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현행 건축물 인증제도의 현황과 정점을 정리해 본 결과 유사 제도 중복 운영 및 세부기준과 인증 항목 간의 중복 등으로 시간과 비용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한건축사협회도 불필요한 인증을 없애고 비슷한 인증은 통합하는 방식으로 각종 인증업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통합해줄 것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지난 2018년에 이어 다시 한 번 건축 관련 인증과 제도를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구분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주택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지예방 건축기준	지능형건축물인증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결로방지 성능평가	공동주택소음영향평가	장수명주택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교육환경평가
관계 법령 및 행정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법지예방)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 (건축물의 법지예방) 법지예방 건축기준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건축법 시행령 제103조(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녹색건축 인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법 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제4항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법 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제4항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벽체 및 창호 등)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공동주택 결로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2014.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법 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9조(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법 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 기준 및 인증제도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 등)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심사기준 및 우수등급기준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교육환경평가의 승인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시행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지예방 건축기준 고시 -'21.7.1 개정 -'21.7.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20.12.10 개정 -'20.12.10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7.12.28 개정 -'18.9.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21.8.23 개정 -'21.8.23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21.3.24 개정 -'21.4.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21.6.3 개정 -'21.7.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20.4.30 개정 -'20.4.30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21.6.27 개정 -'16.12.7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1.1.12 개정 -'21.1.12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18.8.28 개정 -'18.8.28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19.9.27 개정 -'19.9.27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20.3.24 개정 -'20.9.25 시행
의무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지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33호> 1. 중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2.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중점용 판매점) 3.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 제외) 6. 주차시설 7. 주차시설 8. 주차시설(오피스텔) 9. 주차시설(다중생활시설) 1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p>자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3조>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인 건축물 * 제외대상 시행령 제10조 제1항, 설계기준 제33조 제1항 제1호~제5호,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중 강화 규정 적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제6항, 시행령 제12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시행령 제9조 제2항 각 호 기관, 시행령 제9조 제2항 각 호 기관, 사·도 교육청 소유·관리 건축물 신축·재축, 별동 증축 신축·재축, 개축, 별동 증축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3000㎡ 이상 공동주택·기숙사 제외(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공공기관(제2조) 건축물 공공기관(제2조) 건축물 신축·재축·개축·별동 증축 신축·재축·개축·별동 증축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 공공기관(제2조) 건축물+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 1등급 이상 - 상기 조건+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 공동주택 : 제의 * 제6조 제3항 - 연면적 10,000㎡ 이상 신축 또는 별동 증축 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 운영(제4제1항)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 공동주택, 14호 뉴욕 오피스텔, 17호 공장, 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25호 발전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제7항, 시행령 제11조의3,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7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 차량대량 등급 시행령 제9조 제2항 각 호 기관 소유 또는 관리 건축물 신축·재축, 별동 증축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 기복 공공업무시설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신축 및 리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33호>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2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제2항>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3항> 국가·지자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중 시행령(별표 2)의2에 해당하는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학교 설립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정비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2층 이상 혹은 10만㎡ 규모 건축(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제출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승인 / 건축허가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인증 - 건축기준 완화 받을 경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이전 예비인증 신청(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시 예비인증 제출) - 허가·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 설계 변경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 신청 ○ 본인인증 : 사용자인 또는 사용자사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제출 ○ 사용자인·감사 신청 시 : 이행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인증 : 사용자인/사용검사 전 ○ 본인인증 : 사용자인/사용검사 전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인증 : 사용자인/사용검사 전 ○ 본인인증 : 사용자인/사용검사 전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 계획서 제출 ○ 사용자사 신청 시 : 이행 확인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 평가서 제출 ○ 사용자사 신청 시 : 이행 확인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 시뮬레이션 ○ 사용자사 시 : 현장 실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 시뮬레이션 ○ 사용자사 시 : 현장 실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인증 : 설계도서에 의해 평가 ○ 본인인증 : 공사완료 후(의무대상) : 예비인증 취득 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5항> ○ 제출시기 - 법 제6조 제1항 1~3호 계획수립 완료 전 - 법 제6조 4, 5호 인허가 신청예정일 60일전 	
운영 정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47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58, 37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문관(리얼터)), 044-203-53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4753 환경부(환경기술정책과), 044-201-66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과과), 044-201-33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과과), 044-201-33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과과), 044-201-33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과과), 044-201-33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과과), 044-201-33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 국토교통부(교통안전정책과), 044-201-38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1
평가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인허가청, 세움터 (http://www.eais.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관 : 한국부동산원 ○ 인증기관 : IBS KOREA, 한국환경건축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에너지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 ○ 인증기관(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안전관리원, LH, 한국부동산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 ○ 인증기관(10):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LH,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안전관리원, LH, 한국부동산원, 크레디트인증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그린빌딩협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인허가청, 세움터 (http://www.eais.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인허가청, 세움터 (http://www.eais.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 : 녹색건축인증기관에 준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관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 인증기관(8) : 한국부동산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 : 녹색건축인증기관에 준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 인증기관(8) : 한국부동산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 : 녹색건축인증기관에 준한
평가 등급 및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기준 <법지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4조~9조> ① 접근통제 ② 광역성 확보 ③ 활동 활성화 ④ 조경 ⑤ 조명 ⑥ 영장정보처리기 안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별표 3)> ○ 등급기준 등급 등급기준(100점 만점) 1 85점 이상 2 80점 이상 3 75점 이상 4 70점 이상 5 65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구분 주거시설 비주거시설 복합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사항 전 항목(건축부문, 기계설비부문, 전기설비부문) 채택 및 에너지성능지표 점수 65점 이상 취득(공동건축물은 75점 이상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별표 2)> 1등급(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2등급(80이상~100%미만), 3등급(60이상~80%미만), 4등급(40이상~60%미만), 5등급(20이상~40%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건축 인증 기준(별표 10)>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영(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주택성능평가, 친환경주택 설계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중 1개 택일 구분 친환경주택성능평가 친환경주택 설계기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평가 내용 의무사항 이행률 단위 면적당 에너지절감률 또는 이산화탄소 저감률 값 창호 및 벽체 현관문 단열 등 기준 만족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평가 기준 친환경적 친환경적 친환경적 60㎡ 초과 60㎡ 이하 60㎡ 초과 60㎡ 이하 60㎡ 초과 60㎡ 이하 40% 이상 절감 절감 30% 이상 절감 1등급 창호, 2등급 이하 창호, 벽체단열 등 기준 만족 벽체단열 등 기준 만족 창호, 벽체단열 등 기준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기준(6개 항목 필수) ① 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② 클러쉬아웃의 시행 ③ 오물처리 환기가능 ④ 환기설비의 성능검증 ⑤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 ⑥ 건축자재, 접착제 등 시공 관리기준 ○ 권장기준(2개 항목) ① 오염물질, 유해가스를 제거 ② 실내환경 미세먼지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 1층에서 5층은 실내소용도 65데시벨 미만, 6층 이상은 최대면적의 설치면적 소용도 모두 단고 측정된 실내소용도가 45데시벨 이하 - 실내소용도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 : 건축물 시행령에 따라 적합한 환기시설을 갖추어 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주택단지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별표 2), (별표 3)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기준 등급 등급기준(만점:100) 최우수 90%↑ 우수 80%↑ 일반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별표 1) 참조
인센티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별표 7)>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건축기준 완화 비율 % 15% 12% 9% 6%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63조> ○ 용역률,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감면 날짜: 2023년 12월 31일까지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 10% 5% 제로에너지빌딩(시범사업,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1~3등급: 20% 4등급: 18% 5등급: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구분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녹색건축인증 우수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10% 7%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7% 3% ○ 건축기준 완화(용역률, 건축물의 최대높이 완화)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3조(인증기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등급(효율등급) 에너지 자립률 친환경화비율 ZEB 1(1+ 이상) 100% 이상 15% ZEB 2(1+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14% ZEB 3(1+ 이상) 60% 이상 ~ 80% 미만 13% ZEB 4(1+ 이상) 40% 이상 ~ 60% 미만 12% ZEB 5(1+ 이상) 20% 이상 ~ 40% 미만 1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20% 미만 10%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녹색건축 인증 등급 친환경화비율 1+ 최우수 9% 1+ 우수 6% 1 최우수 6% 1 우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10호> ○ 기본형 건축비 가산 사업계획승인인자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특수자재 등의 소비비용(시행비용 포함)을 평가가 가산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10호> ○ 기본형 건축비 가산 사업계획승인인자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특수자재 등의 소비비용(시행비용 포함)을 평가가 가산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등급 이상 취득 시 조례로 건축 기준 완화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등급 이상 취득 시 조례로 건축 기준 완화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별표 4)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예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우수등급기준등(별표 8) 참조 	
인증 수수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별표 6)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경감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2절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 구분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녹색건축인증 우수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10% 7% 에너지효율등급인증 2등급 7% 5%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최대경감률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경감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2절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 구분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녹색건축인증 우수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10% 7% 에너지효율등급인증 2등급 7% 5%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최대경감률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경감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2절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 구분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녹색건축인증 우수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10% 7% 에너지효율등급인증 2등급 7% 5%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최대경감률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경감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2절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 구분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녹색건축인증 우수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10% 7% 에너지효율등급인증 2등급 7% 5%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최대경감률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수수료=1)+2)+타입수 * 단위세대 타입은 기본, 확장형 모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별표 4)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예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우수등급기준등(별표 8) 참조 		